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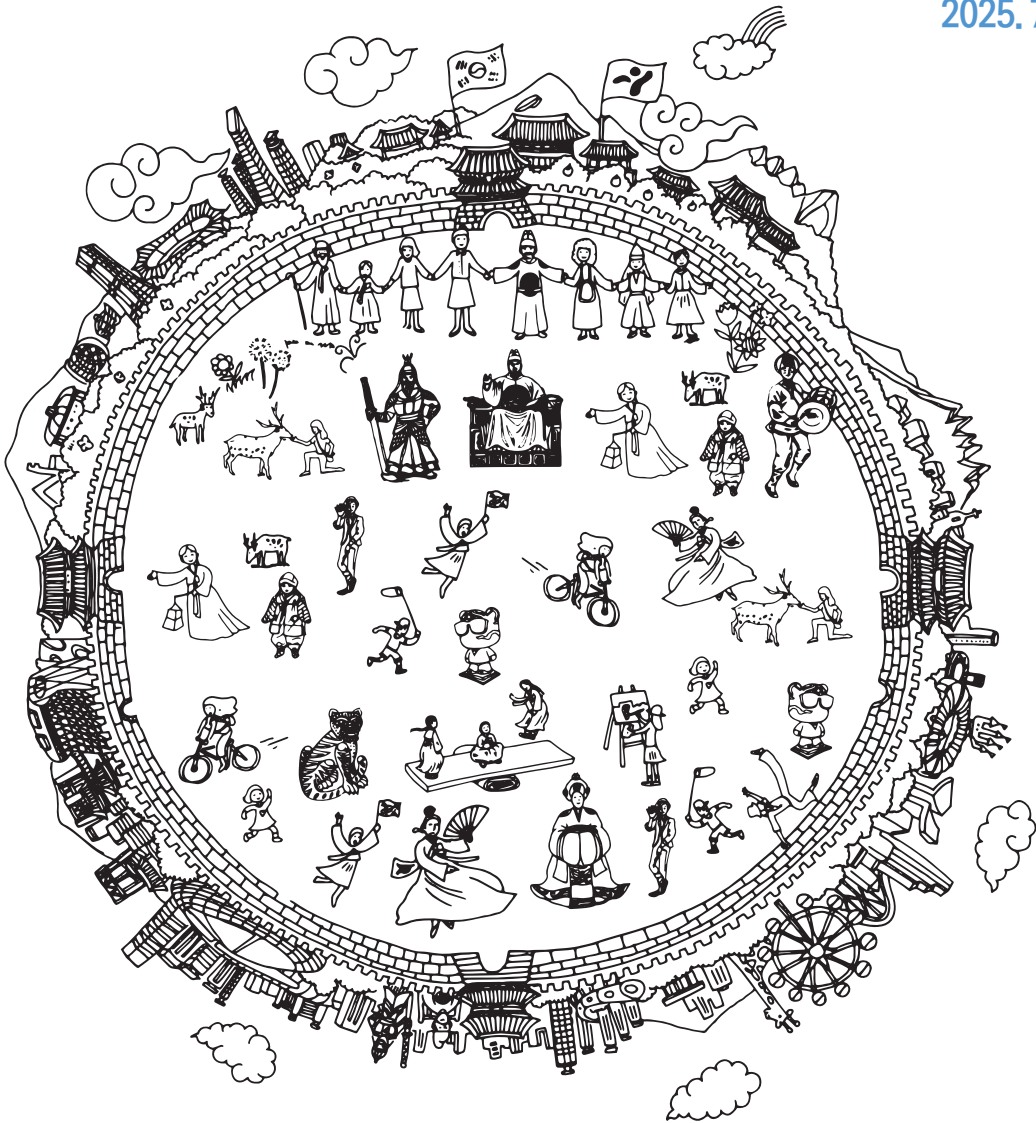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76호
2025. 7. 4.(금)



목 차**◆ 자치법규 등****[조 례]**

제96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968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규 칙]

제47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제471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10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520명” 을 “10,50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54명” 을 “565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4” 를 “별표 4” 로 한다.

별표 4의 일반직 계란, 3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3급	27	16	1	1	9	
5급 이하 소계	10,193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65					
교수 등	487			487		

별표 5의 구분란 중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정원 변동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

－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11명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 25.6.2.)에 따라 [별표 5]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개정

－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 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
무처에 의정국장 직위(3급)를 신설하여 시의회사무처 통솔범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설치함(제2조제1항)
- 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함(제2조제2항)
- 다. 의정국장의 사무분장을 명시함(제2조제4항)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709호****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81	429	1,140	5,153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4,731	420	350	4,963	225
-------	--------	-------	-----	-----	-------	-----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7	16	1	1	9	
부이사관	27	16	1	1	9	

같은 표 6급 소계란,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3	1,966	177	105	1,386	99
시설관리	25	3			22	

같은 표 7급 소계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0	1,314	122	131	1,656	57
-------	-------	-------	-----	-----	-------	----

기계운영	48	2	1	1	44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60	120	37	42	860	1
-------	-------	-----	----	----	-----	---

사무운영	97	39	12	4	41	1
------	----	----	----	---	----	---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65			565		
---------	-----	--	--	-----	--	--

교수·부교수·조교수	487			487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3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교수·부교수·조교수 +11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현장민원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의정국·의사과·언론홍보과·운영지원과·법제과·재정분석과·인사과·현장민원과를 두며,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과장·언론홍보과장·운영지원과장·법제과장·재정분석과장·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국) 의정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의사담당관)”을 “(의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언론홍보실)”을 “(언론홍보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홍보실장”을 “언론홍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법제담당관)”을 “(법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인사담당관)”을 “(인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의정국 설치 및 의정국장 직위 신설, 조직 명칭 변경 및 직제 조정 등 조직개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국장 신설(제3조 및 제4조)

나. 하부조직 명칭 변경 및 직제 조정(제3조~9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